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 본부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현장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방역당국, 교육부 등과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1판)

2022. 3. 14.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목차

│.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1
2. 기본원칙 2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5
Ⅲ. 학교 대응 요령10
1. 등교 전 10
2. 등교 시 11
3. 등교 후(수업 중)11
4. 학교급식 운영 13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14
V. 기숙사 방역 관리 ······ 19

# ▷참고◁

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21
2.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22
3. 학교 내 마스크 착용수칙	23
4.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5
5. 학교급식 방역관리 세부관리 방안	26
6.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시 업무연속성 계획	28
7.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9
8. 「학교 방역인력 운영」가이드라인(안)	30
9.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34
10.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35
1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36
▶ 서 식 ◁	
1.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39

- ◇ 기존 참고자료(포스터 등) 및 서식 등은 이전 지침을 참고하여 활용
- ◇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지속 보완 될 수 있음

# I 목적 및 기본원칙

# 1 목적

- □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 '신종감염병증후군'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 코로나19의 특성

- 임상 증상: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가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 대부분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 (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비밀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증상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
- \* 오미크론 변이 특성
- (전파력·중증도) 델타 대비 ▲전파력은 2~3배 높으나 ▲입원율 1/5(남이공)~3/4(영국), 병원 내원 확률 5/6(영국), 중증화율 1/3(남이공) 수준이나 확진자 증가로 입원환자 증가 추세
- (백신효과) 감염예방, 중증예방 등 백신효과는 델타 대비 감소
- (임상적 특성)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이며, 대부분 경증 ▲증상 지속기간은 평균 5.5일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 '임상'은 사전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병상에 임하는 일"이라 의미로 쓰이나,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지침에서는 '의심'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함

- 1 -



- □ 본 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의** 역**할**과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
- 특히, 이번 지침은 '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및 전파력 등을 고려, 학교 내 감염요인 유입 차단 및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보완
- 또한 현행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지침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연동하여 학교방역 지침 내용도 변경 적용

# 2 기본원칙

- □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감염 사전예방, 학교로의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 철저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환자 발생현황,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sup>\*</sup>」을 수립·보완하여 상황별 대응
  - \* 교내·외 환경, 학교 구성원 역할, 학생 동선관리, 급식관리, 시차등교, 학사 운영, 주기적 선제검사(기숙사 등) 등 고려

#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위한 추진상황 점검항목(요약) ☞ 참고1 (p.21)

- □ 등교수업 시작 전[개학 이전]
- 학생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학교운영방안 수립 및 교직원 교육(비대면) ※ 대면 교육시 '생활 속 거리유지' 실천이 가능한 인원 단위로 실시
- 학교 또는 가정에서는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 방역 전담인력 확충, 방역물품 준비 및 학교전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확보
- 가정통신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등 안내
- □ 등교수업 시작 후
- 발열 확인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지도, 개인위생 수칙 준수여부 등 수시 확인
- 결석 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대책 지원
- □ 학교 내 '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star$  자가진단(앱), 대응조직 운영, 학생·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시설 방역 등
  - ※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고령자(만65세) 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
  - ※ 기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학교 내 주요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 최대한 별도의 근무장소 제공 및 동선 분리를 통해 만약의 상황 대비 철저
    - \* 교장 교감, 보건교사 보건 담당자 등

-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등교수업 시작 전 학부모에게 안내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 (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방역당국의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을 활용하여 학교에 적용)

- □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방역당국 지정병원, 이하 같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개학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진단검사 등 조치
  - ※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견 → 인근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검사 실시(유·초등학생은 보호자 동행)

#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셋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일 실시

## □ 누구나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은 델타 대비  $2\sim3$ 배, 입원율  $1/5\sim3/4$ , 중증화율 1/3, 무증상 비율이  $40\sim50\%$ 로 매우 높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안내 실시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학교 내 **주요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하거나 자체 제작
- 하교 후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 장애 등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생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마스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도 더욱 자주 실시
- ※ 매점, 청소, 경비 등 학교에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건강관리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 기저질환자\*가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가능
  - \* 기저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학교의 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가정 내 관리를 강화** 
  - \* 가정에서의 체온측정 결과, 증상 종류, 해외여행력 등의 내용을 기록 → 학교에서는 출결처리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참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보호자 확인, 음성확인서, 키트 지참 등)
-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일과 중 추가** 발열검사 실시
  - ※ 신체활동(체육수업 등) 또는 식사 후 37.5℃ 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 10~30분 정도 안정시킨 후 다시 체온 측정
  - ※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
  -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수업 중) ☞ 참고2 (p.22)

#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丁世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격리 <sup>*</sup> (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도거이이" 화지자이 경으 ②	수동감시(10일)	<b>3일 이내 'PCR 검사*' 권고</b>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871291 AEME 81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u>3일 이내 PCR 검사</u>\*, 6~7일차 신속 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 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 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 학교장은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 (예시) 학생 : 출석인정 결석처리 / 교원 : 각종 휴가 / 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교장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담** 관리인<sup>\*</sup> 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태 특이사항을 확인
  - \* (예시) 학생 :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
  - ※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교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상시 개방(☞ 참고4, p.25)** 
  -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쉬는시간 마다)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 하여 충분히 환기 실시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되)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환기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팬을 상시 가동
  -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수시로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하며 자연환기 시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할 것)
  - ※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교실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며, 문 손잡이, 난간, 출입문, 엘리베이터, 터치장치, 음수대 등 공동사용 접촉면은 더 자주 소독
  - \*\* 상시 환기 원칙(기상상황 등 고려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 실시)

-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방역물품 상태 점검
  -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1개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충분량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한 보건용 마스크를 일정 수량 예비용으로 확보
  -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교실 또는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

# □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단,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예방접종여부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 허가**
- □ 학교별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 ※ 상세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참조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은 **1층에 마련이 원칙** 
  - 단, 교사 형태 및 교실 운영 방식 등 학교실정에 따라 1층 마련이 어려운 경우 **충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선정하며,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재실하여 있는 경우에는 복도 쪽 창문은 닫고, 실외 쪽 창문은 모두 개방
-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 Ⅲ 학교 대응 요령

# 1 등교 전

- □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중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답임교사 또는 복무답당자)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 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출근)**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 기관 방문 검사 실시
- □ (학교) 학교의 장은 상기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일일점검시스템 가동
- **등교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2 등교 시

- □ (학교)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와 마스크 착용상대\*\*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여부 확인
  - \*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격리·감시 해제 후 이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 94 또는 동급) 착용
  -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등교시): 참고2 (p.22)
- 37.5℃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 유·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 (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등교 시'(요약) ☞ 참고2 (p.22)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발열측정 전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해 등교시간, 출입동선 등 지정 \* 두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 검사 실시장소 변경 가능
  -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교사 입구)에서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고막체온계 사용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가 없는 경우 고막체온계 사용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 3 등교 후(수업 중)

□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관찰
  -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 (발열검사) 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 유·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 (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수업 중'(요약) ☞ 참고2 (p.22)

- 점심식사를 위해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 비접촉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재측정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 추가 증상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
- □ (취약시설 관리) 체육관, 양치실 등 학교 내 취약시설 관리기준 강화
- (체육관) 동일 수업시간 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수업 시 모든 창문 및 출입문 개방 조치, 환기설비 가동, 수업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 (양치실) 양치실은 양치시설(수도꼭지)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양치시설 대기(복도 등) 중 양치금지 및 양치시간 분산 등 조치
  - ※ 취약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전담 방역인력 상주 확인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 4 학교급식 운영

- □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 (식사환경 개선)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 \* (식당배식) 칸막이 설치 의무화. (교실배식) 식사시간 휴대용 칸막이 등 설치 권고
  -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 칸막이 설치 시 권장 높이(참고): (초) 40~50cm, (중) 54~63cm, (고) 55~67cm
- (밀집도 최소화) 식당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공간 활용(교실, 특별실 등), 교실배식 병행\*, 시차배식 등 실시
  - \* 교실 배식 전환·병행 시 반별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 (소독·환기 강화) 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후 수시 환기 강화
  -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식사지도 강화) 식사 시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등 방역실천 교육 및 지도 강화, 학교별 학생지도 계획 수립 및 실천
  - ※ 급식 시간 학생 지도 방역인력 추가 배치, 교직원 임장지도 지원 등

## **── 【 식사지도 시 강조 사항 】** ─

- (**손 소독**)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추가 배식,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화 금지) 배식 대기, 식사, 추가 배식, 퇴식 등 전 과정 대화 금지
- (음식 섭취)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금지
- (종사자 방역관리) 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상시 착용 권고, 방역인력 활용하여 식당 내 시설 소독 지원 강화, 급식종사자 격리 시 급식 대응방안\* 마련
  - \* 학교별로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한 급식운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 구성되어있는 '대체인력풀' 사전점검 및 상시 관리 강화 ※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등 비상 시 급식제공 방안 예시(참고6. p.28)

#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자체(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방역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은 기관(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필요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등)
  - \* 보건소 관리 대상: 확진자 또는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이용자)의 격리 및 감시
-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은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권고)** 도입, 선제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 ◈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동일 공간 생활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위)'와는 상이함
- ※ 상기 참고 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권고)**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7일간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서식1, p36),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참고9. p.34)
  -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등교중지 권고

-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 (참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3.14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반대본)

##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예)】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교직원은 1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가정에서 검사)

## 【확진자 계속 발생시 진단검사 적용(예)】

확진자 발생시마다 24시간 이내 검사1회, 2~3일 간격으로 추가 2회 검사를 권고하나, 학교내 확진자 계속 발생시 반복검사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 가정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소 7일간 3회(선제검사 포함)' 권고

## 【접촉자 대상 보호자 안내 문구(예)】

귀하의 학생이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학급)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요청드리니,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주시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확진자 인지 후 단계별 조치사항(예시) ≫

활동	담당	역할			
사전준비	학교장	- 학교방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준비사항 점검 ※ 주요 내용: 접촉자 분류 기준 마련, 고위험 기저질환자 사전 파악(PCR 검사 등 안내 및 학부모 동의 등 포함) -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담임)교사	- 확진자 발생상황 정보를 학교 내 전파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파악(같은반 등)			
보고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담당자)	- 접촉자 조사 기준, 양식 등 주요 정보를 (담암)교사에게 안내 -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접촉자 기준 마련			
	학교장	- 상황 총괄 관리 -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 학교 자체 접촉자 분류 기준 확정			
	(담임)교사	학교 자체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른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방역관리자에게 제출			
자체조사	방역관리자 (코로나 19 담당자)	- 접촉자 분류에 따른 조사 결과 취합 및 재확인 - 접촉자 주의사항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학부모 안내 포함)			
	학교장	- 자체 조사 진행상황 점검 - 조사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대상 학교장 확인서 발급			
	(담임)교사	<ul> <li>접촉자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등교기준 및 기타 주의 사항 안내</li> <li>검사(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li> <li>검사 결과 및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공유</li> </ul>			
진단검사	방역관리자 (코로나19 담당자)	- 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등 실시 안내 -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등) 결과 관리			
	학교장	- 검사 진행상황 점검 - 검사 결과 및 특이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전파차단을 위한 별도조치 및 후속관리	학교장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 집단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방역당국 및 교육(지원) 청과 협의하여 귀가 조치 범위시간 협의 -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 이용제한(소독 등) 및 방역활동 지속 강화 -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협력적 운영 필요

# □ 집단 발생시 조치사항

- (학교) 확진자 발생시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제한 조치**\*
  -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 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소독을 위한 시설 이용제한 조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2판))

- 학교장은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 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필요시 교육청, 방역당국 지원)

##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예시) >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발생 (방 <del>문포</del> 함)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 <del>문포</del> 함)	■이동 경로 명확	$\Rightarrow$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마다 반복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학교자체 일상소독을 통해서도 관리 가능 (단,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조에 따른 소독기준\*은 준수 필요)
- \* <학교> 4월~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이상 / 10월~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이상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

- (학생 및 교직원)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토록 안내
  - 가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교육(지원)청) 확진자 발생 학교의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신속 항원검사 키트 보급 및 후속 진단검사 등 지원
  - ※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팀 구성·운영 등 검토

# ♥ 기숙사 방역 관리

※ 동 기숙사 방역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

# □ 입사 전 관리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 기숙사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다인실**을 운영할 경우 **거리유지**가 **충분히** 되도록 **인원 배정**(가급적 1인 1실 사용 권고)
  - 기숙사 실별 **인원 배정 시 학급·학년 단위로 배정** 권고
- **입사예정 학생 전원**은 가정 ·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실시
  - ※ 주말 등 미귀가 학생은 학교기숙사에서 검사 실시
- 기숙사 입사 시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 확인
  -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숙사 시설 및 환경 관리

-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시 상시 발열체크 실시
- 기숙사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되, **부득이하게 개방**할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거리 확보**(좌석 띄우기 등) 등 **사전 조치** 
  - \* 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공간 등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정제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생활실,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치하고, 오염 물질이 기숙사 내 방치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기

# ○ 시설 내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수시로 실내 공간 환기(창문 및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 실시
-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 입사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입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실시
  - ※ 주말 등 귀가 후 입사시 검사 외. 주중 1회 실시
- 기숙사 입사생은 매일 2회\* 발열 및 의심 증상 확인
  - \* ①기상 후 아침식사 전, ②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 기숙사 출입, 공용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 **동 간, 충 간, 호실 간 이동 제한**
- 취침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간식 섭취 금지**
- 학교 밖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방역 관리자가 기숙사 입실 전 방문지 확인,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고 중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중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 및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해당 생활실에서 중상을 재확인
  - 해당학생,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등 대기 조치(1인실 사용) 하고,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 조치하여 중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시키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 참고1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시기	추진 ㆍ점검 사항				
개학 전 또는 등교수업 시작 전	●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보완  ■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가진단앱 등 활용하여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사전 진단  ■ 방역 전담인력 확보 및 역할 부여  ■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장비 점검  ■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준비  ■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 위생 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 등) 비치 및 감염병예방교육(예방행동 및 방역수칙) 시행  ■ 안전한 급식 제공 방안 수립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점검  ■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소독  ■ 학생 간 거리 유지 위한 책상 배치  ■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등교수업 시작 후 (계속)	<ul> <li>모든 학교 출입자 발열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li> <li>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 시 충당</li> <li>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청소 및 소독</li> <li>학생 및 교직원 결석현황 일일 모니터링</li> <li>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li> <li>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li> <li>기 수립한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보완(필요시)</li> </ul>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 ≪ 등교 시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되.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측정 가능
- ※ 다만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가능
- i) 출입문이 다수인 학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출입문으로 등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ii) 학년별(또는 학급별) 등교시간을 조정하여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
- ※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통학버스 내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확인,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출발 전·후 소독 및 수시 환기

## ○ 실시방법

- i) 요일별(또는 일자별) 발열검사 담당 교직원 또는 전문 담당인력 지정 등 발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온계 사용방법 사전 교육 실시
- ii) 발열검사는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재측정
- ※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iii) 발열검사시 발열 외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
-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iv)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 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실시

## ○ 실시자 주의사항

- i)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보거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 ii)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 등교 후(수업 중)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 : 교실(또는 교무실, 행정실, 열화상카메라 설치장소 등)
- 실시방법
- i)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는 점심시간 직전 수업 종료 후 **급식실 이동 전** 각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 ii)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재측정
- ※ 재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되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iii) 발열검사시 발열 외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
-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iv)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실시

## ○ 실시자 주의사항

i)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인 경우 대체자 지정

# 참고3

#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 □ 기본수칙

##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쓰세요
- 마스크는 가급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를 쓰세요
- ※ 부득이한 사유(호흡기 질환 등)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해요
-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지켜주세요.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만졌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무지르세요
- 마스크를 서로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돼요

### ◇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을 때 지켜주세요.

- 마스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끈만 잡고 벗으세요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질 때. 망가질 때 지켜주세요.

- 학교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고,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 새 마스크를 쓰세요
- 새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 [학생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 실내에서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

- 수업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토론·영어수업 등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쉬는시간)

-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이용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점심시간

- 점심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도 마스크를 써주세요
-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마스크를 벗어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 벗은 마스크는 얼굴에 닿지 않는 바깥쪽이 식탁에 닿도록 잘 놓아두세요
- 목걸이를 사용하는 경우 목에 걸어두는 것도 가능해요

# □ (교사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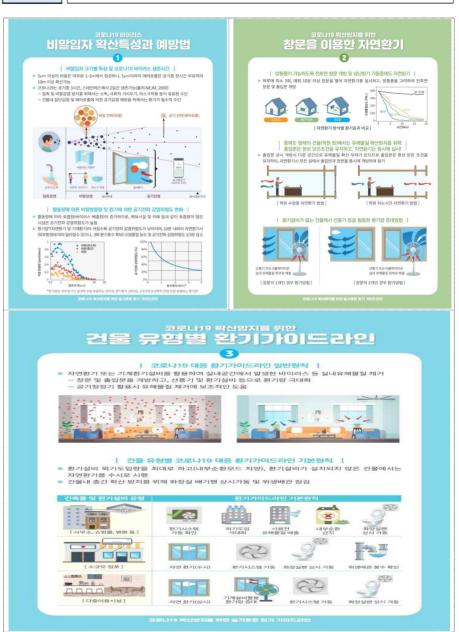
- 수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학생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보호구 사용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 사용을 지양합니다.
-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안면보호구)는 이마 부분이 막혀있어야 하며, 귀 옆 부분까지 얼굴 전체를 덮고, 턱 아래 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어야 합니다.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잠시 중단하세요. 이 경우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 (교사용) 학생 지도수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해 주세요
- 학생들이 손쉽게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학생들이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때 집에서 가져온 새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해당 학생을 지도해주세요
- ※ 기저질환: 만성페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참고4

#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 학교급식 방역 세부관리 방안

# □ 급식 과정별 감염예방 관리

【 급식과정별 위해요소 관리방안 】

단계	위해요소	관리방안(예)			
검수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 오염 배송직원과 접촉 종사자 간 접촉	• 검수 담당자는 검수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척·소독  • 배송직원은 학교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후 손 소독  • 검수 시 배송직원과 거리두기 실천  • 검수 후 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 이동(종사자 간 거리두기)			
보관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오염	• 식품창고, 냉장·냉동고에서 식품 입·출고 시 마스크 착용 철저			
전처리 및 조리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 오염 종사자 간 접촉	• 종사자는 모든 급식공정에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급식 인원 증가로 배식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분산 조리 권장			
배식	배식 대기 중 학생 간 접촉 손에 의한 식기구 오염 배식원- 학생 접촉 자율배식대 운영에 의한 접촉 식수대에서의 학생 접촉 추가배식 시 학생 비말오염 및 접촉	<ul> <li>학생은 식사 전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식사장소로 이동</li> <li>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li> <li>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거리두기(바닥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등)</li> <li>급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등 교육자료 게시</li> <li>지정된 직원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 후 식판·수저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식사 전에 손 세착소독 또는 위생장갑 착용 후 식판·수저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식사 전에 손 세착소독 또는 위생장갑 착용 후 식간구를 가져가도록 함</li> <li>배식 종사자는 배식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li> <li>배식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소독, 배식용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li> <li>배식 시 배식 담당 직원과 학생 모두 불필요한 대화 삼가</li> <li>사람 간 및 식기구 접촉 예방을 위해 자율배식대 운영 지양</li> <li>※ 자율배식대 운영 시 일회용 위생장갑 제공 및 손잡이가 긴 배식 도구 사용</li> <li>식수대 운영 시, 학생 간 거리두기 실천</li> <li>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식수대 운영 지양(금지)</li> <li>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li> <li>학생들이 추가 배식을 위해 식사 장소 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li> <li>추가 배식 대기 시 학생 간 거리두기 지도</li> <li>지정된 직원이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추가 배식</li> </ul>			
식사	식사 시 학생 간 접촉	<ul> <li>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li> <li>식사는 정해진 식사장소에서만 조용히 섭취</li> <li>※ 후식 등 일부 음식을 이동하면서 먹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지도 강화</li> <li>식사 시 대화 금지</li> <li>식사 중 다른 학생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지도</li> </ul>			
청소 및 소독	식당 환기 부족 학생 접촉 기구 오염	• 식당 상시 환기 및 급식 전·후 수시 환기 강화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 ① (식사 지도)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토록 (담임)교사, 방역인력 등이 현장지도
  -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 식사 지도 시 강조 사항 】

- (손 소독)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추가 배식,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화 금지) 배식 대기, 식사, 추가 배식, 퇴식 등 전 과정 대화 금지
- (음식 섭취)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금지
- **❷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급식 과정에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철저
  - (개인위생 관리)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 철저, 위생장갑 사용,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등 실시

## 【 급식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

- (손 씻기·소독)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손 씻기, 70% 에틸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를 용법에 맞게 사용
- (위생장갑 사용) 식품 취급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용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고무장갑(라텍스) 사용,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위생복장 착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 착용
- (마스크 사용)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해 급식 전 공정에서 마스크 착용(모든 급식 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권고)
- (휴게실) 주기적으로 충분한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유지, 휴게실 내부 및 사물함 등 손잡이 수시 소독,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 휴게실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유휴교실 등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
- (개인방역 관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 등) 확인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 출근중지에 따른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활용 또는 비상시 급식운영 대책에 준하여 운영
- ※ 납품업체 배송직원도 급식실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및 위생복 착용 철저, 체온 기록 및 건강상태 등 확인. 발열·호흡기 관련 증상 있는 자는 급식실 출입 금지

# 찬고6

#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시 업무연속성계획(예시)

- (보건교사) 교내 업무 대행자(교사) 지정, 인근 학교 보건교사 및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자문 등 사전 대응체계 준비
  - ※ 보건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은 교내 응급처치 및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 가능

## **── ≪ 참고: 학교방역 업무지속 대책≫** ──

# 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

▶ 보건교사 2인 또는 보건교사 ▶ 유사시 대비 교내 업무 및 보조인력 배치 학교는 최대한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2인 모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 보건교사 1인 배치학교

대행자(교사) 지정, 인근 학교 보건교사 및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자문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 교육(지원)청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순회 보건교사 운용. 인근학교 겸임근무 배치 지원 인력풀구성 등 유사시 대비 계획을 강화하여 학교 방역 차질 예방

○ (급식종사자) 급식종사자 자가 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을 대비한 상황별 급식제공 방안 마련으로 비상시 신속 대응

# ── ≪ 참고: 비상 시 급식제공 방안≫ -

# 영양교사, 영양사 격리 시

- ▶ 교육(지원)청 업무 지원
- ▶ 재택근무 가능 시 교육(지원) 청에 현장 지원 요청을 통한 업무 지속
- ▶ 영양교사·영양사 지원 TF 구성·활용

# 조리종사자 격리 시

- ▶ (일부 격리) 학교 및 교육 (지원)청 대체인력풀 활용,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 식단 및 조리방법 간소화 등
- ▶ (전체 격리) 단기 방안으로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 제공 - 중장기방안으로 외부위탁 등 급식 제공 방안 검토

# 식재료 공급차질 발생 시

- ▶ (일부 공급 차질) 식단 및 조리방법 간소화 등
- ▶ (대부분 공급 차질)
- ☞ "전체격리" 대응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

## ① 급식소 방역(소독, 환기 등) 인력 지원

- ② 비상조직 체계 구축(급식종사자, 공급업체, 대체인력, 외부위탁 업체 현황 등)
- 주비사항 ③ 소통계획 수립(학생·학부모에게 급식 변경내용 신속 안내 방안 등)
  - ④ 급식 재개 시 복구 대책 마련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급식 시설·기구 청소 등 실시)

# 참고7

#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학교명 :

■ 점검 일시 : 2022. . .

■ 점검자 :

*학교장 O O O* (서명)

학교기숙사 현황							
전교생 수 입소생 수 남학생 여학생				취침공간 수	남학생	여학생	일시적 관찰실 등

# □ 점검 항목

		저지거기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비고
	○ 기숙사 내 침실 사용 시 충분한 거리 확보 여부		
입소 전 관리	○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실시 여부		
24	○ 기숙사 입소 시 학생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등)확인 여부		
	○ 방역관리자 지정 및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여부		
	○ 출입문 (가급적) 일원화, 발열체크 실시 여부		
	<ul> <li>기숙사 내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등) 사용 최소화,</li> <li>개방시 충분한 거리확보(칸막이 설치, 좌석 띄우기 등) 조치 여부</li> </ul>		
기숙사	○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교육 및 홍보물 부착 여부		
시설 및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비치 여부		
환경 관리	○ 기숙사 내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및 쓰레기통 관리 여부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 방치 예방)		
	<ul><li>기숙사 내 주요 공간(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 공간 포함) 청소,</li><li>소독 및 수시 환기 여부</li></ul>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 기숙사 내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여부		
	○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실시 여부		
	<ul><li>기숙사 입소생 대상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여부</li><li>※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li></ul>		
입소생 및 방문객	○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제외한 동 간, 층 간, 호실 간 이동 제한 여부		
출입·이동 등 관리	○ 취침 공간 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철저 및 집단 간식 섭취 금지 조치 여부		
	○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한 관리 조치 여부(방문지 확 인 및 발열체크 등 주기적으로 증상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 제한 조치 여부 ※ 교사 등 학교관계자 접촉은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학교 방역인력 운영」가이드라인(안)

본 가이드라인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배치된 **방역** 인력의 역할과 임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학교 방역을 지원코자 마련하였으며, 교육청·학교의 여건에 맞게 수정 활용이 가능함

# □ 설정 방향

- (교육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21.6.)을 통해, 집행의 혼선 예방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시 → 방역인력 운영 범위 등 위임
- (교육청·학교) 학교별 특수성·사정을 감안하여 일선학교 방역 활동 단계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 적용 범위 등

- (적용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 (예산지원 범위) '22년 학기 정상등교에 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한시적 방역인력 근로자 인건비
- (채용 제한)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취업 제한이 있는 경우

# □ 근무 장소별 업무 세부 내용

- 학교 전반 방역 활동
- 등교 시 발열체크 지워, 학교 출입자 관리 지워 및 공간 환기 등
- 쉬는 시간 복도, 화장실, 교실 외 장소 등에서 학생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 지도**
- 점심시간 양치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지도
- 교내 공용시설 및 기구(출입문 손잡이, 교구 등) 표면 소독
- 방역용품 관리, 기타 방역활동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

# ○ 특정 실·장소별 방역 활동

- (보건실) 보건교사 보조업무(의료인 업무 제외)
- (급식실)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식탁·의자·칸막이 등 급식시설· 기구소독, 식사장소 환기, 식사 지도 및 배식 지원
- ※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지도 등 포함, 다만, 음식 배식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만 가능
- (기숙사) 입소 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 지원 등

# □ 예산 집행 시 참고사항

- (집행 기간) '23. 2월말 ※ 3월말까지 정산 및 보고(교육청→교육부)
- (계획 수립) 인력규모 등을 감안한 학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을 반영토록 권장
  - (역할 정립) 학교별 방역인력 관리자 지정, 방역 인력 역할 명시
  - (인력 운용) 선발기준, 지원자격, 채용인원, 근무기간, 인건비, 근무 장소 및 4대 보험 지급 등
  - (사전 교육) 채용 후 사전교육(1시간 내외) 실시(아래사항 포함)

## 【근로자 금지 행위 목록】

- 1. 체벌하는 행위
- 2.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3.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 4.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교 및 학생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5. 종교적 포교 활동 등 학교방역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 6.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 (계획 변경) 인원, 근무장소 변경 등은 학교장 내부결재로 변경

[참고 서식]

# 학교방역인력 활동 일지

<000학교>

01 71	00	( )			학교방역인력	학교방역인력
일 자	20 .	( )		거제	러파당되던릭	관리자
성 명			(인)	결재		
9 9			(1)			
	<del>활동</del> 시간		활동	내용		
내 용						
" 0						
특이						
사항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은 미작성

#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교방역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교방역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학교장 귀하

#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7 H 50 NÅ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 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ul> <li>장기이식환자</li> <li>1) 신장이식 환자</li> <li>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li> <li>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li> <li>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li> <li>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li> <li>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 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li> <li>・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li> <li>・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li> <li>・ 면역억제치료</li> <li>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li> <li>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li> <li>3) 길항물질 (antimetablites)</li> <li>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li> <li>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li> <li>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li> <li>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li> </ul>

참고10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질병관리청

#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



# 감염 예방

- ①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 2차 접종받기
- ② 3밀(밀폐·밀잡·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페·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❸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고위험군조기진단·조기치료

◆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⑤ (일반) 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양성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안내문

##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 🔢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2022.3.6.

# □ 동거인 관리



# 동거인

### M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 Ⅱ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022.3.6.

#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 10일간의 권고수칙

- ✓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건강 관리

-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알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 · 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2022.3.6

# 서식 1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소속 기관명	(예시) 행복초등학교
검사 대상자	(예시) 1학년 7반 25번 홍길동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원장) (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